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4
----------	-----

2019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8일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연 의원)

1. 제안이유

- 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은 범죄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
- 나.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또는 층간분리)를 위한 캠페인·홍보 등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건물주의 관

심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남녀 분리 대상이 아닌 건물 내 화장실 안전 확보가 요구됨.

다. 이에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층간 분리 포함) 시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화장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4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민간 화장실 중 남녀분리 등은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관 계로 오래된 건물 등에는 남녀분리가 안 되어 있는 등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범죄노출 등을 이유로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
- 그러나 건물주의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화장실의 남녀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층간 분리 포함)하는 경우 분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자치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함. 따라서 개정안 제1조에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민간화장실의 관리 및 운영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u>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u> ----- -----</p>

- 또한 개정안 제2조제3항(아래 표 참조)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하여 민간화장실을 정의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p>

- 또한 제4조1항을 개정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던 관리운영비를 관리운영비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상도 개방화장실 외에도 민간화장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u>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u>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u>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 --- <u>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을 위해</u> ----- <u>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u> -----</p>

- 마지막으로 시장이 화장실 관리에 있어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및 건축허가시 남녀 화장실 구분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p> <p>① ~ ⑤ (생략)</p> <p>⑥ 시장은 <u>개방화장실</u>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3. (생략)</p> <p>⑦ (생략)</p>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u>개정안 참조.</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u></p> <p>4. <u>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 기관 협력사업</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나. 개정안의 필요성

- 2018년 11월 22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¹⁾되어 남녀구분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합 3천㎡에서 합 2천㎡로 축소되고, 의료·문화·집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 2천㎡에서 합 1천㎡로 개정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2019년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에 국비 22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함바 있으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각각 2개씩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화장실 분리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이외에도 공중위생 등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 할 것임.

3 종합의견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져 있고, 이에 대하여 여성이나 범죄에 취약한 아동 등에 대한 안전의 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분리를 촉진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소규모 노후 건물의 경우 화장실에 대한 남녀분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남녀화장실을

1) 개정 2017년 11월 21일

구분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과 협력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4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8일

발 의 자 : 김용연, 김소양, 서운기,
김동식, 봉양순, 이정인,
김화숙, 오현정, 김혜련,
이영실, 이병도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은 범죄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실정임.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또는 층간분리)를 위한 캠페인·홍보 등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건물주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남녀 분리 대상이 아닌 건물 내 화장실 안전 확보가 요구됨.
- 이에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층간 분리 포함) 시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견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목적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화장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제4조 제1항, 제4조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개방화장실”을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로 하고, “관리운영비”를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개방화장실”을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

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력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u>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운영 지원 등을 통해</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2. (생략) <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p>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u>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u>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u>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u>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 --- <u>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u> 을 위해 ----- <u>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u> -----</p>

현행	개정안
<p>② ~ ⑤ (생략)</p> <p>⑥ 시장은 <u>개방화장실</u>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3. (생략)</p> <p>⑦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u></p> <p>4. <u>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 기관 협력사업</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